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53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윤준병 · 박민규 · 문대림
서미화 · 이춘석 · 권칠승
안호영 · 이원택 · 서영석
김교홍 · 김 윤 · 최혁진
전용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출관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산(概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

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금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금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출관은”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선금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급과 개산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선급과 개산급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선금과 개산금) <u>지출관은</u>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概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선금과 개산금) ① <u>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u> ----- ----- ----- ----- ----- ----- ----- ----- -----.
<u><신 설></u>	② <u>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u>

<u><신 설></u>	<u>지급할 수 있다.</u> <u>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u> <u>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2항에</u> <u>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u> <u>선금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u> <u>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u> <u>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u>
---------------------------	--